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50,161,065	22,504,832
일반회계	636,568,646	19,097,059
특별회계	113,592,419	3,407,773
공기업특별회계	36,332,692	1,089,98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6,332,692	1,089,981
기타특별회계	77,259,727	2,317,792
의료보호특별회계	303,251	9,09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14,575	21,437
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362,747	40,882
수질개선특별회계	74,879,154	2,246,375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조서] "붙임"과 같다.

제 5 조 [명시이월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04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